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2015. 12

물순환안전국

【 목 차 】

제1장 일반개요 ····· 1

1.1 배 경 ····· 1

1.2 현 황 ····· 1

1.3 관련규정 ····· 1

1.4 추진경위 ····· 2

1.5 지침 주요내용 ····· 2

1.6 배수설비 폐쇄관련 사항 신설 ····· 2

1.7 지침적용 대상 및 시기 ····· 3

1.8 행정사항 ····· 3

제2장 배수설비 설치 ····· 4

2.1 배수설비 설치 신고 ····· 4

2.2 배수설비 시공 ····· 16

2.3 배수설비 준공검사 ····· 18

제3장 배수설비 폐쇄 ····· 25

3.1 배수설비 폐쇄 신고 ····· 25

3.2 배수설비 폐쇄 시공 ····· 29

3.3 배수설비 폐쇄 완료 검사 ····· 34

제4장 배수설비 유지관리 ····· 40

제5장 관련법규 ····· 43

제1장 일반개요

1.1 배 경

건물·토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배수설비의 설치·폐쇄에 관한 매뉴얼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배수설비 관리 대책 마련

1.2 현 황

○ 배수설비 설치 대한 관리는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규정에 의거 설치자가 시공 후 CCTV 영상 자료 및 시공 사진이 포함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 건축물 철거시 기존에 사용하던 배수설비의 폐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배수설비와 공공하수관로 접합부가 밀폐가 이뤄지지 않아 도로함몰 및 하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음

1.3 관련규정

○ 배수설비 설치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 하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하는 자는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배수설비 폐쇄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오수 배수관로 도면 제출)

〔도로법 제73조〕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1.4 추진경위

○ 2010.06.04. : 배수설비 설치 및 관리지침 수립 및 시행

○ 2015.11.09.~11.13. : 배수설비 폐쇄 신설에 대한 개정안 의견수렴

- 자치구 하수관련부서, 인허가부서, 도로관리부서 의견 수렴

○ 2015.11.20. : 시·자치구 합동 회의

- 배수설비 폐쇄 조건부여 방법
- 배수설비 폐쇄 방법에 대한 시공 적정성

○ 2015.12.01.~12.11. : 배수설비 폐쇄 방법에 대한 실행방안 협의

- 단지관을 이용한 폐쇄 실행방안 협의(하수단지관 제작 업체)

1.5 지침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수밀성, 내구성 확보를 위한 천공개수 및 이격거리 기준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및 준공검사서 작성 방법

○ 배수설비 설치 신고시 표준설계도 작성 방법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및 준공검사서 접수시 검토 절차의 매뉴얼화

○ 배수설비 폐쇄 절차 및 신고 방법

○ 배수설비 폐쇄 완료 신고서 접수시 검토 절차의 매뉴얼화

○ 배수설비 설치 및 폐쇄 자료의 체계적 관리

1.6 배수설비 폐쇄관련 사항 신설

○ 현 행

- 배수설비 폐쇄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없어 건물 멸실 등 배수설비의 폐쇄가 필요할 경우에도 배수설비 미폐쇄 및 방치

○ 개　선

- 폐쇄 대상 배수설비의 신고, 시공 및 폐쇄 완료 확인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배수설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1.7 지침적용 대상 및 시기

○ 대　상

-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거나, 공공하수도에 유입되어 있던 배수설비를 폐쇄하려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시　기

- 자치구 지침 시달일로부터 30일후(2016. 1. 1부터 시행)

1.8 행정사항

○ 시청 및 자치구 하수 및 도로, 건축, 주택업무 관련부서 지침시달

○ 분기별 시행 실태 확인 및 점검 시행

제2장 배수설비 설치

2.1 배수설비 설치 신고

2.1.1 일반사항

○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2〕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서를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신고 및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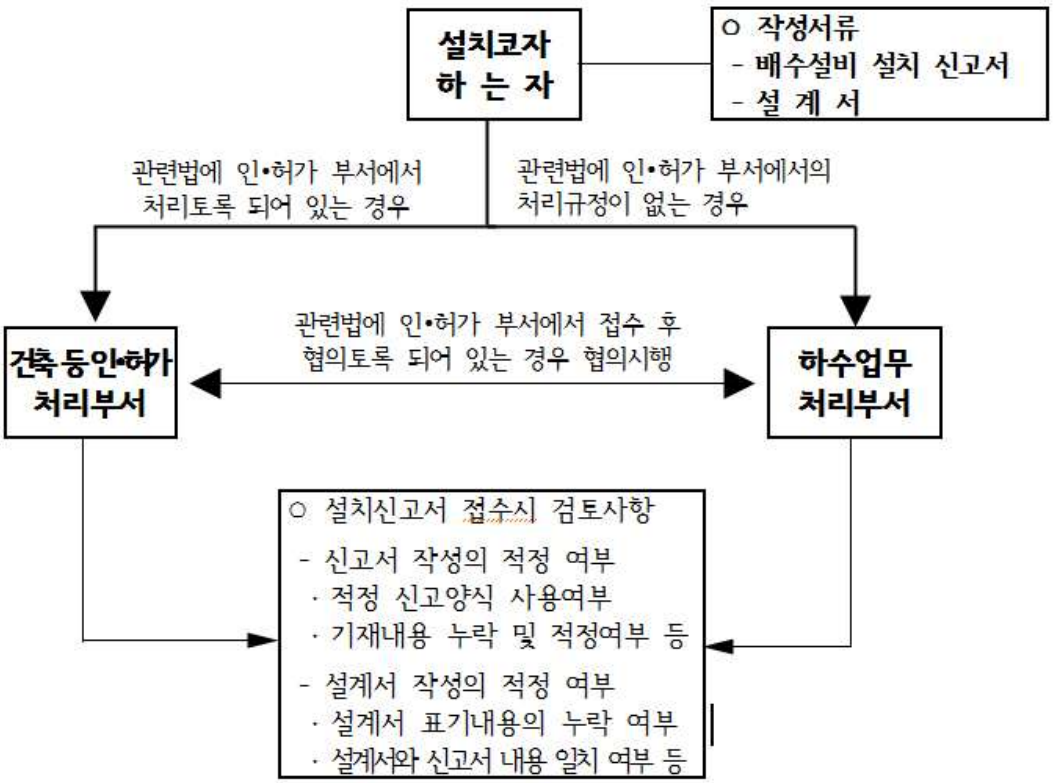

2.1.2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 및 검토 세부내용

○ 배수설비 설계서 작성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

○ 설치신고서 접수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가. 배수설비 설계서 작성

1). 설계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

○ 관 경

-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인구(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1,000 이하
관경(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 합류관과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총 길이가 3m 미만인 것은 지름이 75㎜인 관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m^2)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관경(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좌편과 같은 비율로 관경 또는 개수를 증가한다

-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배수량(m^3/일)	1,000 미만	2,000 미만	4,000 미만	6,000 미만	6,000 이상
관경(mm)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좌편과 같은 비율로 관경 또는 개수를 증가한다.

- 관의 크기는 최소 값으로 특수하게 유량이 유집하는 곳에서는 그 수량을 지체 없이 유하시켜 적은 량이라도 범람하는 일이 없도록 관의 크기와 경사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 관의 경사 및 유속

- 관로의 경사는 관로 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물받이 등의 설치

-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 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가 직선으로 된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 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고형물질(固形物質)이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효간격 10㎜ 이하인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油脂類)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土砂)가 유입되는 유입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이나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타 기준

○ 최소 토피

- 건물 부지 내에서는 최소토피 20㎝ 유지

○ 공공하수관로 연결(천공)

- 공공하수관에 연결시에는 천공기를 사용

천공기 작업	천공후	배수설비 연결 완료

- 천공 후 연결시에는 지관(연결용 자재)를 사용하여 수밀성 유지

천공후 단지관 접합	천공후 단지관 접합	천공후 단지관 접합

- 천공 방법(본관이 흄관의 경우)

기 준	천 공	
• 공공하수관거에 천공시 관저고에서 1/2 이상 지점 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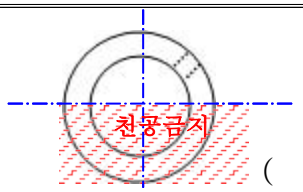 (단면)	(O)
※ 관 상단부 및 수평부, 하단부 천공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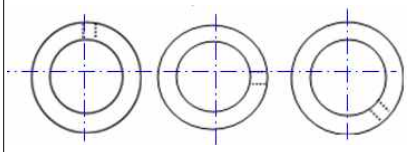	(X)
• 공공하수관거 한본에서 단일면에 2공까지만 천공 ※ 2공 천공시 천공간격은 10cm 이상 이격거리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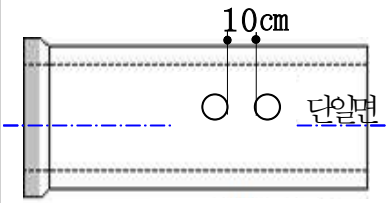 (평	
• 관경400m이상 공공하수관거 한본에서 양면에 2공씩 천공시에는 1m이상 이격거리 확보 ※ 관경300mm인 경우 한 본에서 양면 천공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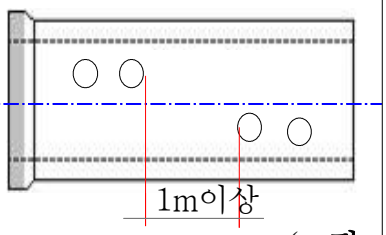 (평	(O)
※ 400mm이상 공공하수관에서도 양면에 2공씩 천공시에는 동일 선상에서는 천공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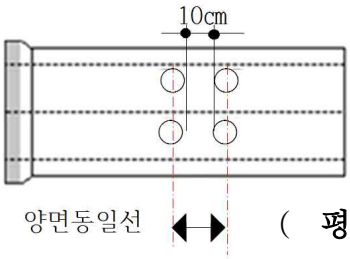 (평	(X)
• 공공하수관거의 관경이 450mm인 경우 한본에서 양면천공시 연결관 관경 100mm이하 까지만 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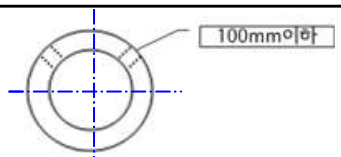 (단면)	(O)

3) 배수설비 설계서 작성 방법

○ 배수설비 설계시 배수설비가 접속되는 공공하수관로의 관경이 450mm 이하인 경우 공공하수관로 관경 및 기존의 배수설비 연결상태 확인 (1m이상 거리확보)

○ 공공하수관로의 상·하류(맨홀 ~ 맨홀사이) 관저고와 건물부지고를 사전 측량 시행

○ 공공하수관로 연결시 공공하수관로 관저고에서 관경의 1/2이상 지점에 연결토록 표시

○ 배수설비 매설지점, 공공하수도 연결 관로번호, 관경, 유속, 경사 등 표시

○ 공공하수도와의 접속부위 상세도 작성

○ 평면도와 입면도를 작성하여 적정시공 유도

※ 도면작성 "예시" - 합류식 지역

① 합류식(우,오수받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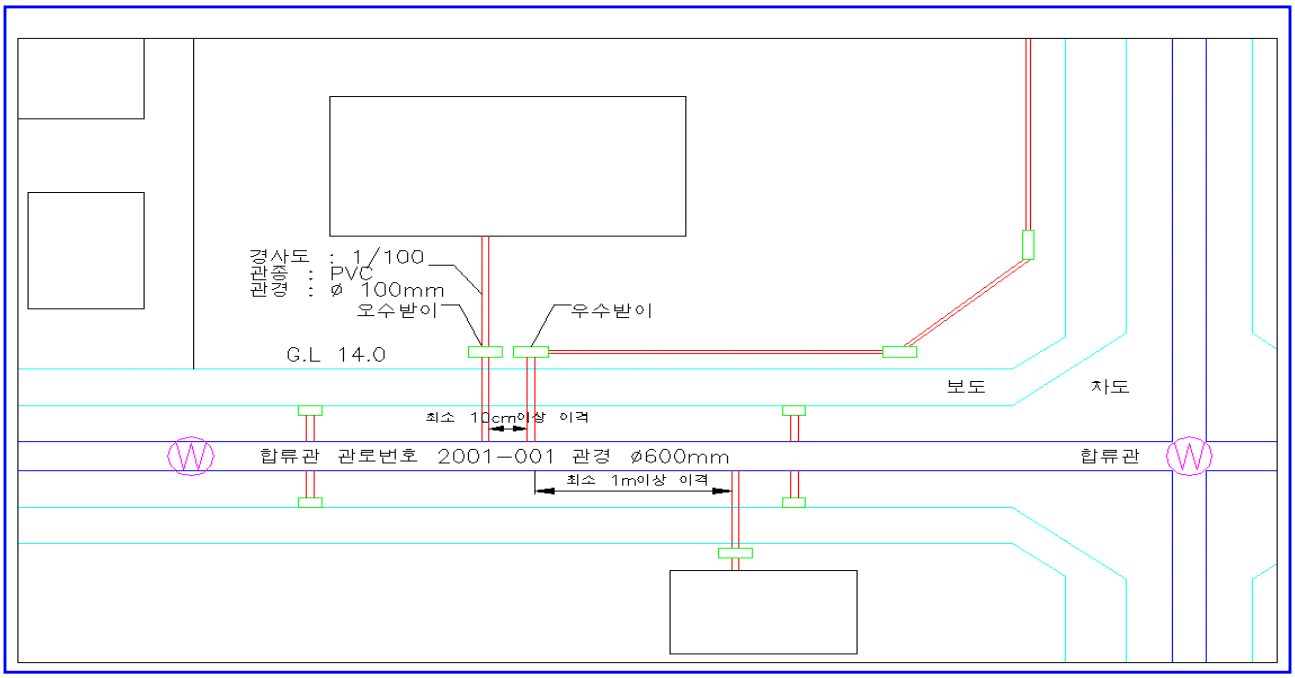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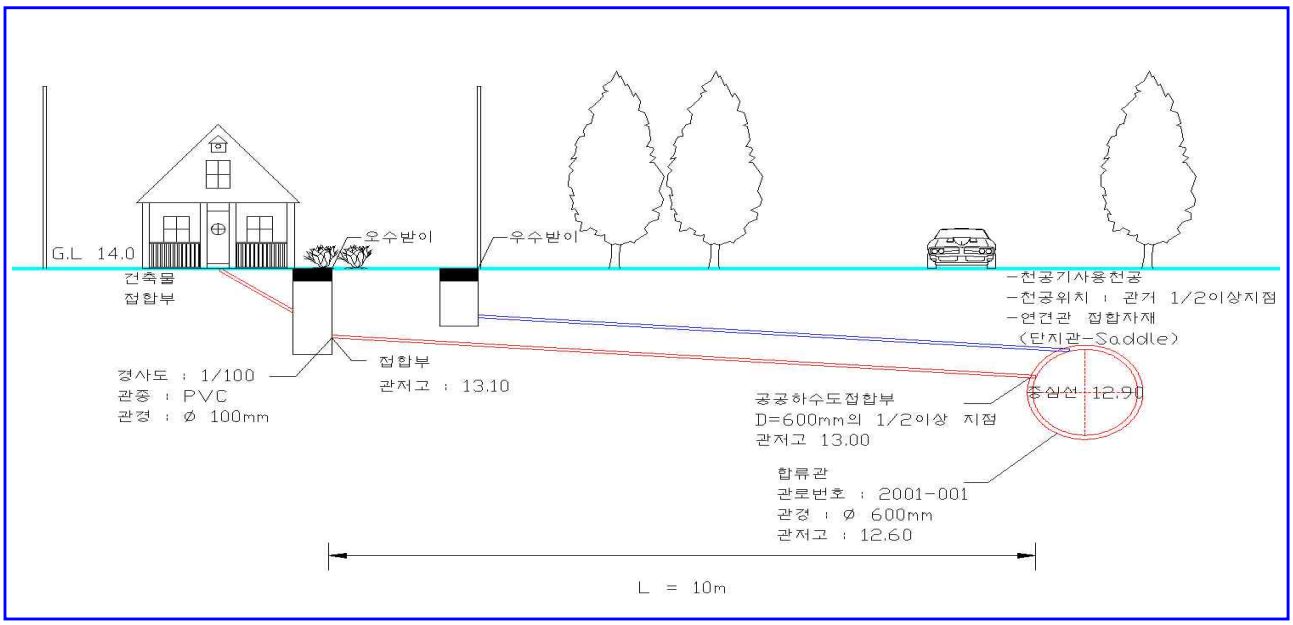

- 상세도 작성 : 물받이, 우,오수받이, 공공하수관로 연결부 등

② 합류식(우,오수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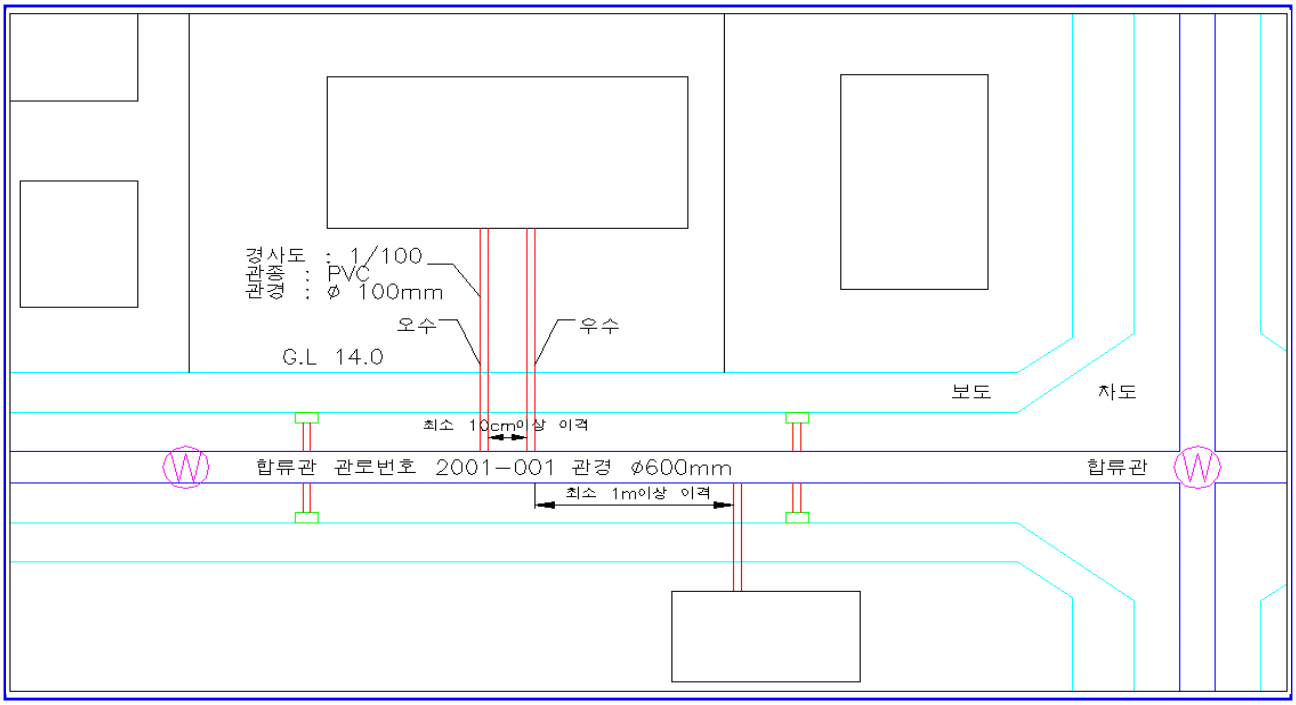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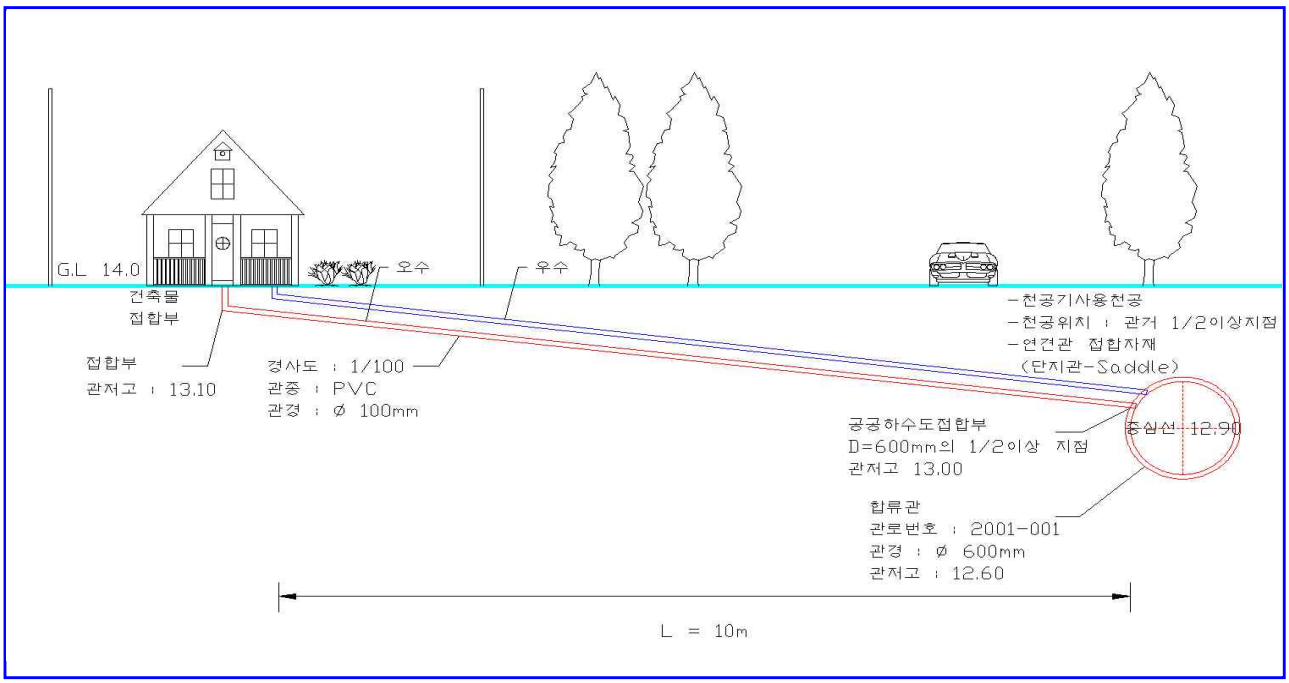

- 상세도 작성 : 물받이, 우,오수받이, 공공하수관로 연결부 등

※ 도면작성 "예시" - 분류식 지역

① 분류식(우,오수받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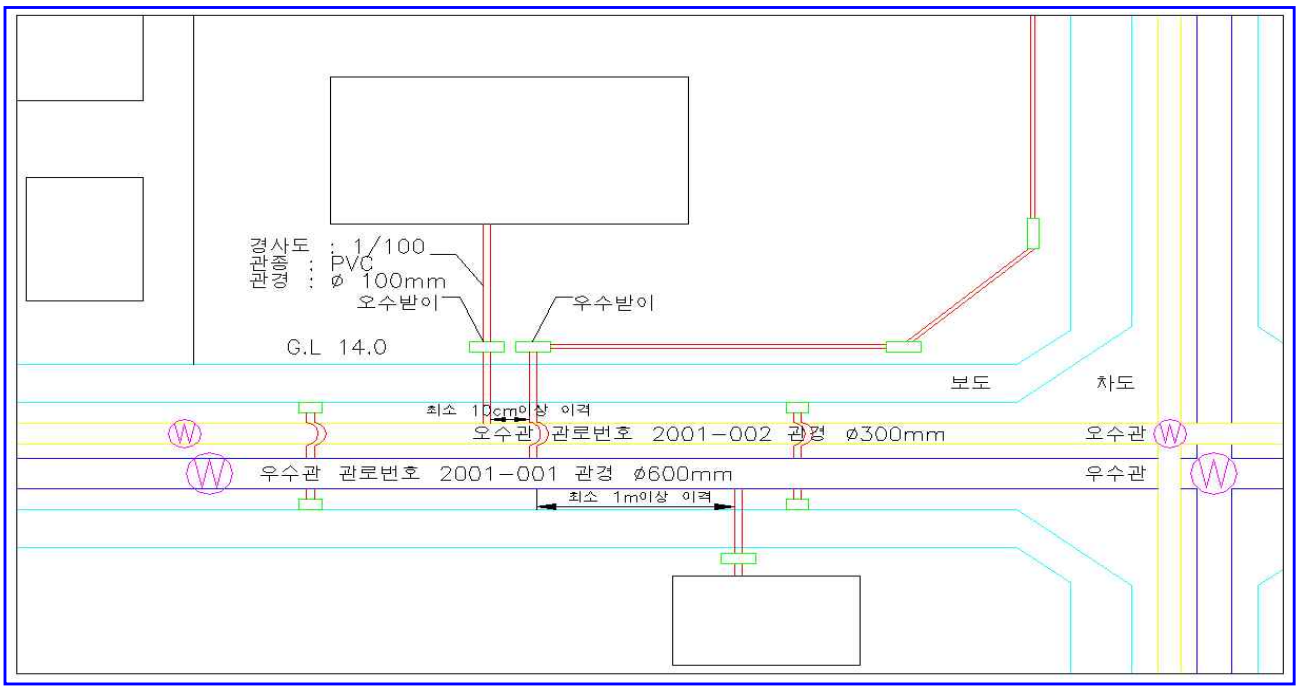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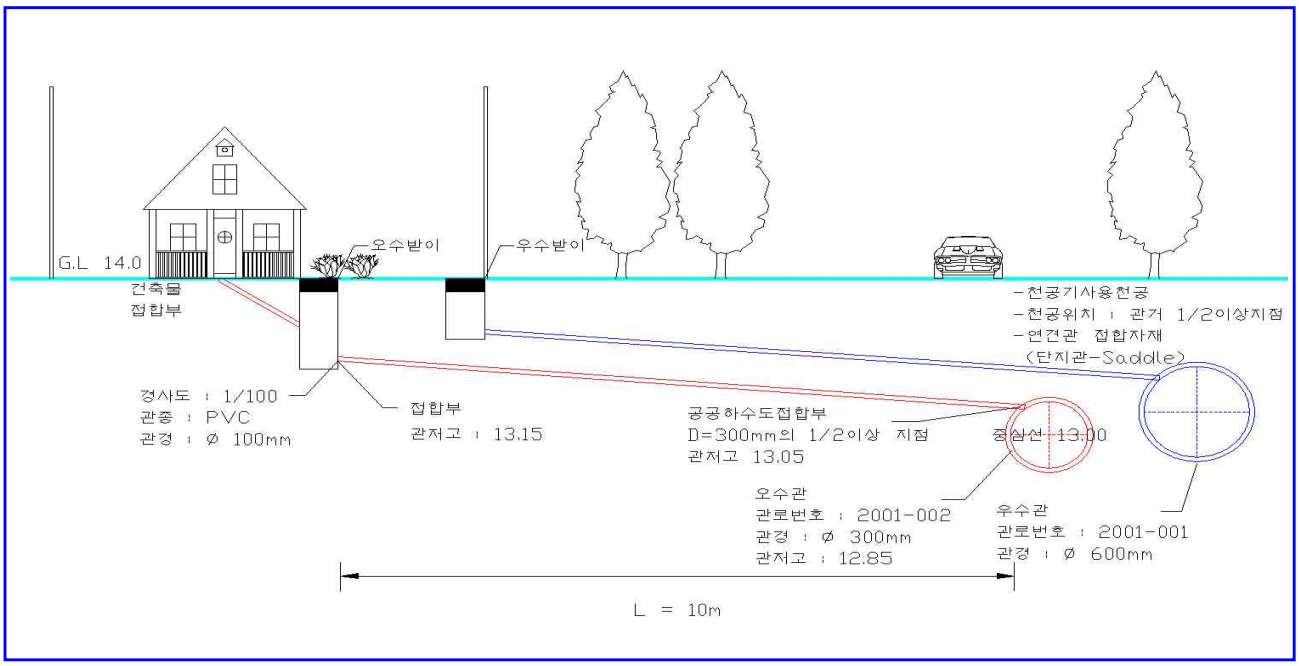

- 상세도 작성 : 물받이, 우,오수받이, 공공하수관로 연결부 등

② 분류식(우,오수받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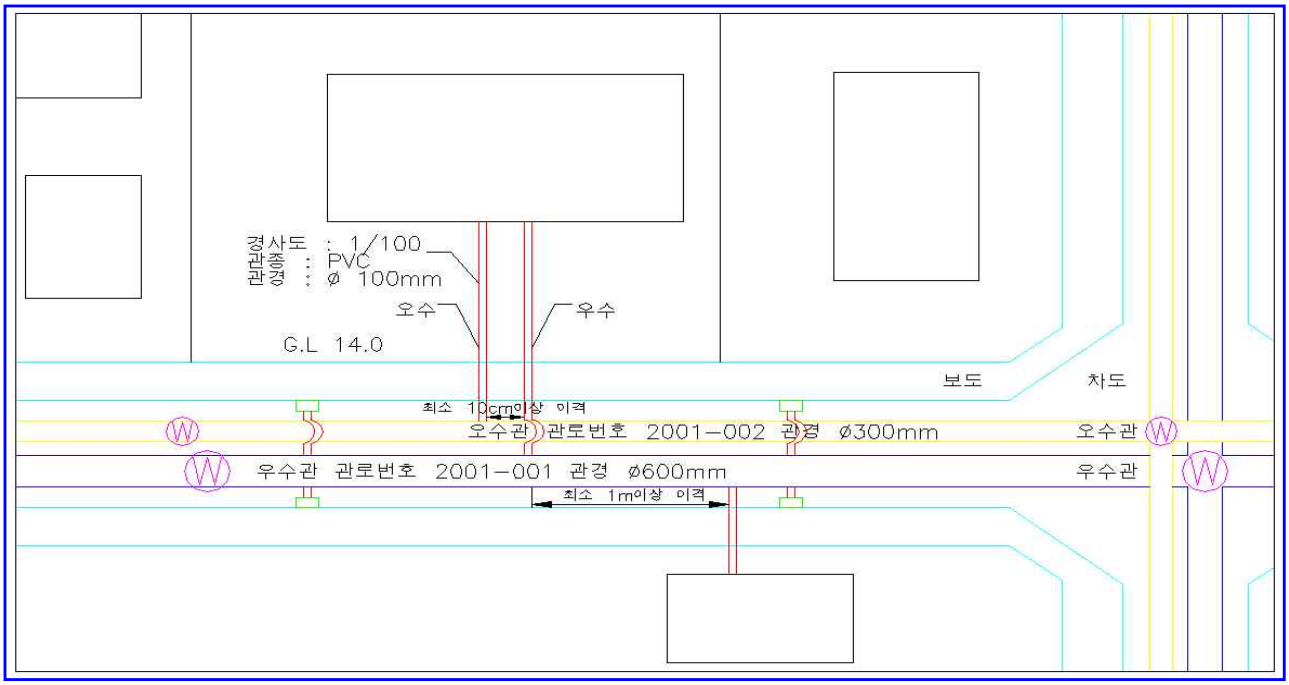

-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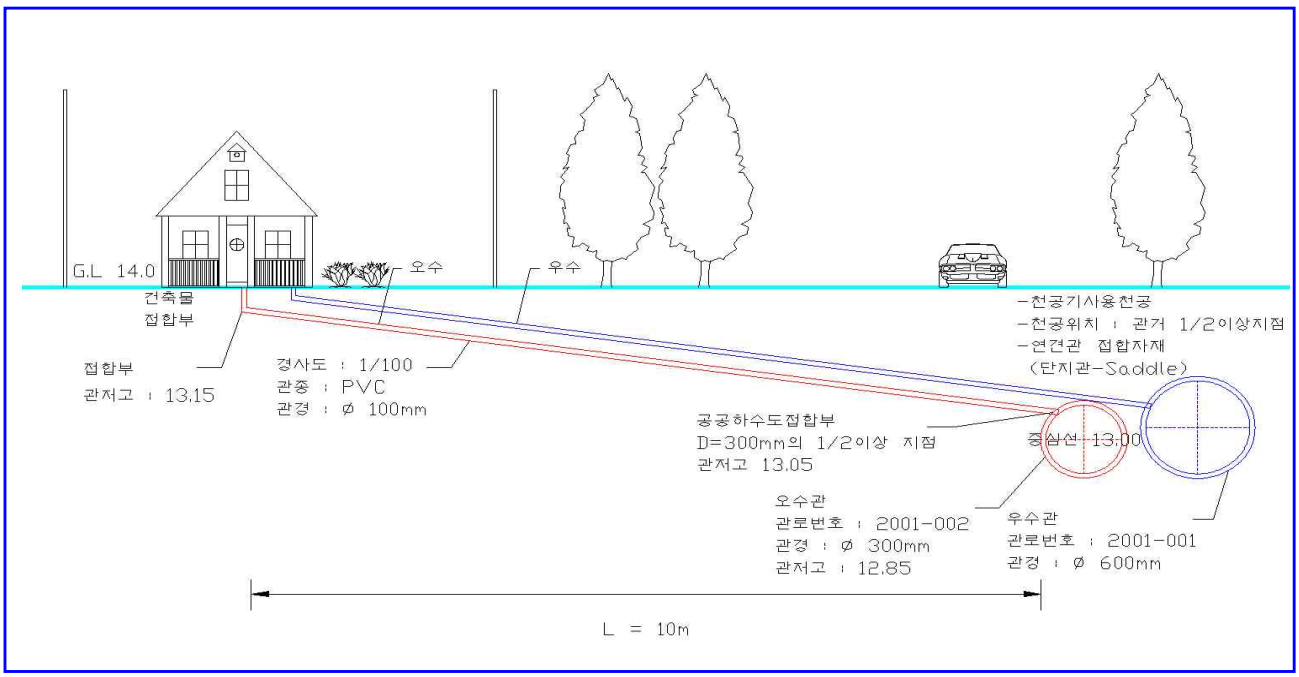

- 상세도 작성 : 물받이, 우,오수받이, 공공하수관로 연결부 등

나.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

1) 신고서 양식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통 반)			
	배출수량	㎥/일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 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2)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정된 신고서에 기재 내용 누락 없이 작성

○ 배수설비 설계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 배수설비 시공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을 명할 수 있음

※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 제①항 〈신설 2009.6.26.〉

- 하수도법 제27조 제②항에 의거 배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자 제외)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하수도법 제51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 하수도법 제27조 제④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시작신고 항목 추가 작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및 수량〕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⑧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자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있는 경우 인·허가 부서의 담당자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있지 않아 관련 부서에서 하수업무 담당부서로 협의하는 경우 하수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table>
<tr><th>구 분</th><th>확인내용</th><th colspan="6">확인결과</th></tr>
<tr><td rowspan="11">신 고 서</td><td rowspan="2">신고서 양식 적정 여부</td><td colspan="3">여</td><td colspan="3">부</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기재내용 누락 여부</td><td colspan="3">여</td><td colspan="3">부(누락항목 기재)</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시공자 기재여부</td><td colspan="2">상 호</td><td colspan="2">자격종목</td><td colspan="2">등록번호</td></tr>
<tr><td>여</td><td>부</td><td>여</td><td>부</td><td>여</td><td>부</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발생수량(설치신고서 하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 산정 적정 여부</td><td colspan="3">적 정</td><td colspan="3">부적정(내용기재)</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수량 및 수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상인지 여부 (이상인 경우 사용시작신고 항목 작성 여부)</td><td colspan="4">이 상</td><td rowspan="2">이 하</td></tr>
<tr><td colspan="2">사용시작란 기 재</td><td colspan="2">사용시작란 미 기 재</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15">설 계 서</td><td rowspan="2">평면도 및 입면도 작성여부</td><td colspan="3">여</td><td colspan="3">부</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인접 배수설비와 1m이상 이격거리확보 여부</td><td colspan="3">여</td><td colspan="3">부</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13">표시내용 누락 및 적정 여부</td><td rowspan="2">구분</td><td colspan="4">누락 및 적정 여부</td></tr>
<tr><td colspan="2">여</td><td colspan="2">부</td></tr>
<tr><td>배수설비관경</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배수설비관종</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배수설비연장</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배 수 설 비 매설경사(유속)</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부 지 내 배 수 설 비 최 소 토 피</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건물 부지고</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접속공공하수관 관로번호</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공공 하수관 상 • 하 류 관 저 고</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공공 하수관 접속 상세도</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천공 이격거리</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연결용 자재</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신고서와 설계서</td><td rowspan="2">상호 내용 일치여부</td><td colspan="3">여</td><td colspan="3">부(불일치 항목)</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able>

2.2 배수설비 시공

2.2.1 일반사항

○ 관련 자료

- 배수설비의 시공은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및 설계서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및 준공계(준공도면)

○ 도로점용(굴착 · 복구)

1)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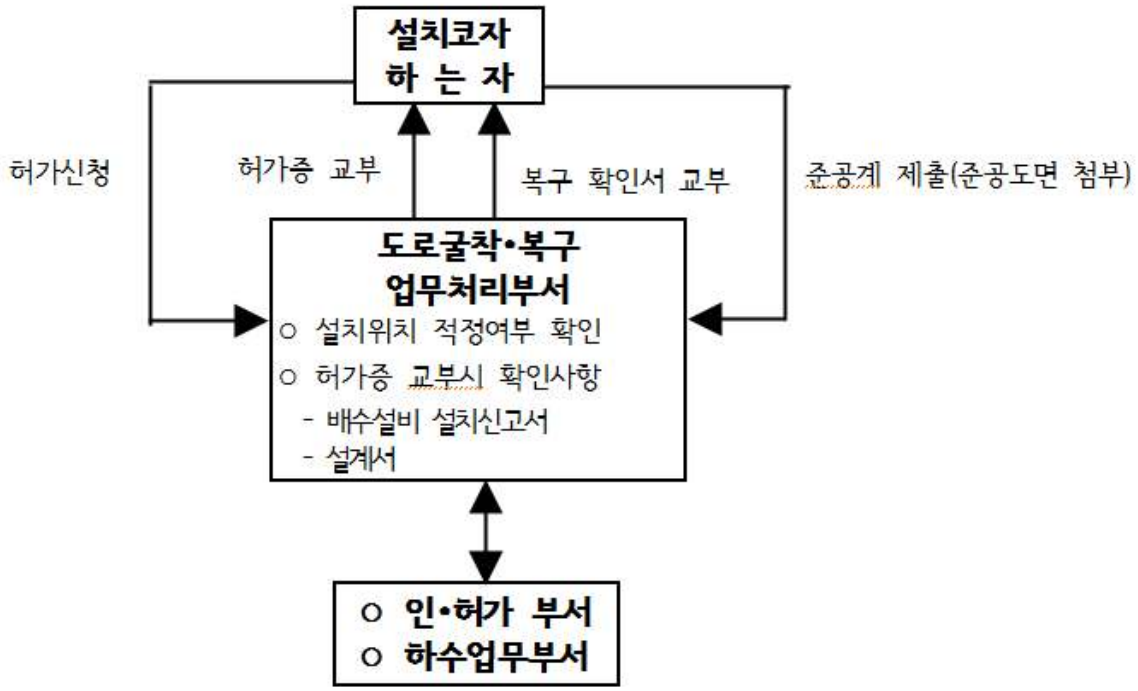

2) 도로점용(굴착 · 복구) 허가 신청시 검토사항

- 도로굴착 · 복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허가신청시 건축 등 인 · 허가부서 및 하수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굴착 · 복구 신청 위치와 배수설비 설계도면상의 위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 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

- 건축 등 인 · 허가부서와 하수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도로굴착 · 복구 업무 담당부서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2.2.2 배수설비 시공시 유의사항

○ 각종 신고 및 허가 서류에 일치되도록 시공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및 설계서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보완 후 시공 조치

○ 공공하수관로 연결

- 배수설비와 공공하수관로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시공
-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을 사용하여 내구성 및 수밀성 확보
- 천공기는 배수설비 관로의 외경보다 큰 구경을 사용하여 공공하수관로 천공 내벽까지 삽입되도록 시공

○ 감리·감독 철저

- 전·중·후 사진 촬영시 반드시 현장 확인
- 전·중·후 사진 촬영시 현장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전·중·후 사진은 우·오수받이, 공공하수관로 천공 등 주요 시설물이 있는 지점은 지점별로 촬영
- 공공하수관로 천공시에는 천공 전, 천공 중, 천공구멍이 2개 이상인 경우 이격거리(1m이상) 확인, 단지관 삽입, 배수설비관 연결로 구분하여 촬영하되 반드시 허가지번이 표시된 표시판을 설치하고 촬영
- 감리·감독의 부실로 배수설비가 부적정하게 설치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토록 조치

2.3 배수설비 준공검사

2.3.1 배수설비 준공 일반사항

○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27조 제⑤항〕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한 준공검사신청서 제출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준공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건축법 제22조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 가능

○ 준공검사신청 및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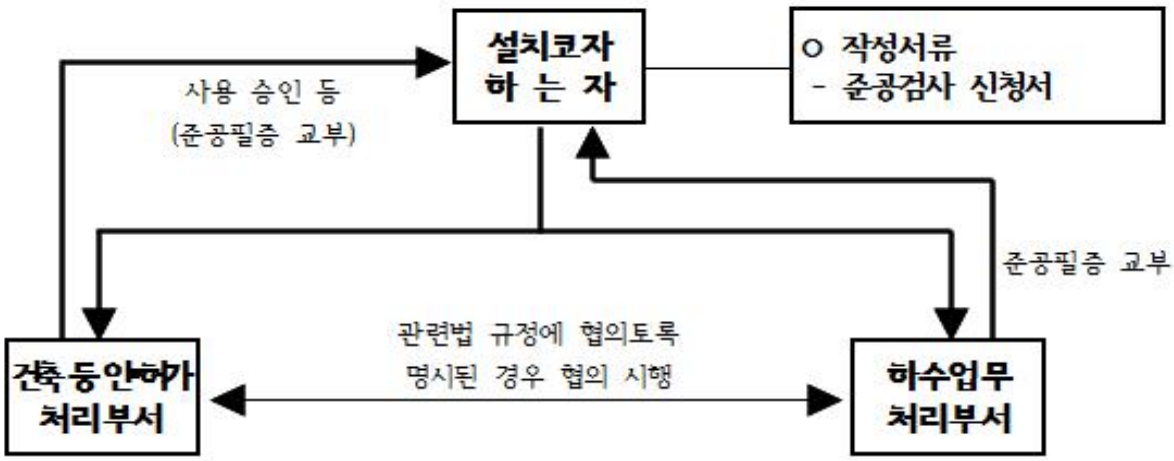

○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시 검토사항
- 준공검사 신청서 적정여부
  · 적정 신고양식 사용여부
  · 기재내용 누락 및 적정여부 등
- 시공의 적정여부
  · 설계서와 현장과의 일치여부
  · 사진촬영의 적정여부
  · 시공상태의 적정여부 등

2.3.2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및 검토내용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

1) 준공검사 신청서 양식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table>
<tr><td colspan="7">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td><td>처리기한
7일</td></tr>
<tr><td rowspan="3">설치자</td><td>법 인 명</td><td colspan="5"></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인)</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시공자</td><td>법 인 명</td><td colspan="5"></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인)</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배수설비현황</td><td>설치목적</td><td colspan="6">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td></tr>
<tr><td>설치위치</td><td colspan="6"></td></tr>
<tr><td>관 종</td><td colspan="6">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td></tr>
<tr><td>관 경</td><td>Φ　　mm</td><td>연장</td><td>m</td><td>접속방법</td><td colspan="2">(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td></tr>
<tr><td>배출수량</td><td colspan="2">㎥/일</td><td colspan="4">※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td></tr>
<tr><td colspan="8">「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td></tr>
<tr><td colspan="8">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 사진 각 1식</td></tr>
</table>

2)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정된 신청서에 기재 내용 누락 없이 작성

○ 준공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 배수설비 시공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을 명할 수 있음

○ 전·중·후 사진 촬영

- 배수설비(우·오수받이, 맨홀, 관로 등) 및 공공하수도 접속지점에 대하여 지점별로 촬영
- 공공하수도 접속지점 촬영시에는 현장 확인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
- 공공하수관로 접속지점은 천공시, 천공 후, 2공이상 천공시 이격거리(1m 이상) 확인, 단지관 또는 가지달린관 설치 후, 배수설비 연결후로 구분하여 촬영하되 위치 및 허가번호를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 후 촬영하여 위·변조 방지

○ CCTV 영상 자료 및 보고서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접합부를 관로 내부에서 식별 가능 토록 촬영
- 사업대상지 상하류 첫 맨홀까지 CCTV 촬영

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접수시 적정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1) 검토 체크리스트 검사자 및 확인자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있는 경우

- 검사자 : 감리자 또는 업무대행건축사
- 확인자 : 인·허가부서 담당자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있지 않아 관련부서에서 하수업무 담당부서로 협의하는 경우

- 검사자 및 확인자 : 하수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 준공검사 신청시 체크리스트

구 분	검사내용	검사결과						확인결과	
신 청 서	법정 양식 사용	여		부				여	부
시 공 자	신고서상의실시공자	상 호		자격종목		면허번호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최종 설계서 (설치신고서와 변경이 없을 경우 검토 제외)	평면도 및 입면도 작성	여		부				여	부
	인접 배수설비와 1m이상 이격거리 확보 여부	여		부				여	부
	표기내용	구분		누락 및 적정 여부				적 정	부적정
				여		부			
		배수설비관경							
		배수설비관종							
		배수설비연장							
		배수설비 매설경사(유속)							
		부지내 배수설비 최소토피							
		건물 부지고							
		접속공공하수관 관로번호							
		공공 하수관 상하류 관저고							
		공공 하수관 접속 상세도							
		천공 이격거리							
		연결용 자재							
검사항목 (최종 설계서에 의하여 시행) 확인자는 설계서와 시공상태 사진 및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시공 및 감리의 적정 여부 확인	시공의 적정 여부	구 분		시공의 적정 여부				적 정	부적정
				여		부			
		배수설비 연결부							
		배수설비 경사							
		배수설비 관경							
		배수설비 재질							
		오·우수 분리 배관							
		오접 여부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2.3.3 준공검사 결과 조치사항 및 준공검사 필증 교부

1) 준공검사 결과 조치사항

○ 적정여부 검토 체크리스트에 의한 확인결과 적정한 경우 준공검사 필증 교부

○ 확인 및 준공검사 결과 부적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토록 통보

- 시정 완료 후 준공검사 재신청 및 재 준공검사 시행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0조 및 제8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조치나 허가의 취소 처분

2) 준공검사 필증 양식

■ 서울시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별지4호서식】

<table>
<tr><td colspan="10">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td></tr>
<tr><td rowspan="3">설치자</td><td>법 인 명</td><td colspan="8"></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3"></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시공자</td><td>법 인 명</td><td colspan="8"></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3"></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배수설비현황</td><td>설치위치</td><td colspan="8"></td></tr>
<tr><td>관 종</td><td colspan="8">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td></tr>
<tr><td>관 경</td><td colspan="2">Φ mm</td><td>연장</td><td colspan="2">m</td><td>접속방법</td><td colspan="2">(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td></tr>
<tr><td rowspan="7">준공검사항목</td><td colspan="9">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 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td></tr>
<tr><td colspan="9">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td></tr>
<tr><td colspan="9">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td></tr>
<tr><td colspan="9">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td></tr>
<tr><td colspan="9">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td></tr>
<tr><td colspan="9">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td></tr>
<tr><td colspan="9">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td></tr>
<tr><td rowspan="3">검사자</td><td>소속(법인명)</td><td colspan="2"></td><td>직 위</td><td colspan="2"></td><td colspan="2" rowspan="3">성명 (서명 또는 인)</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10">귀하께서 제출한 배수설비공사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인)</td></tr>
</table>

제3장 배수설비 폐쇄

3.1 배수설비 폐쇄 신고

3.1.1 일반사항

○ 관련 법규

〔하수도법 제34조 제④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제②항〕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도로법 제73조 제①항〕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 폐쇄 절차 흐름도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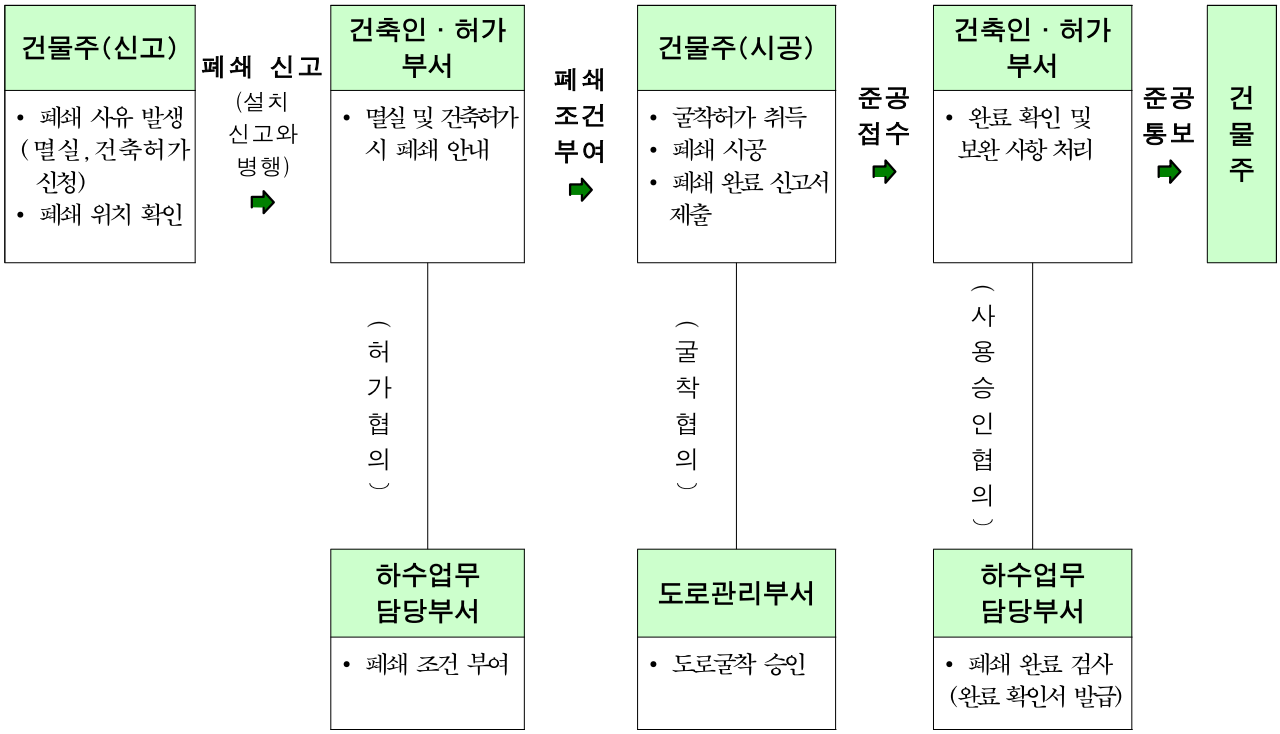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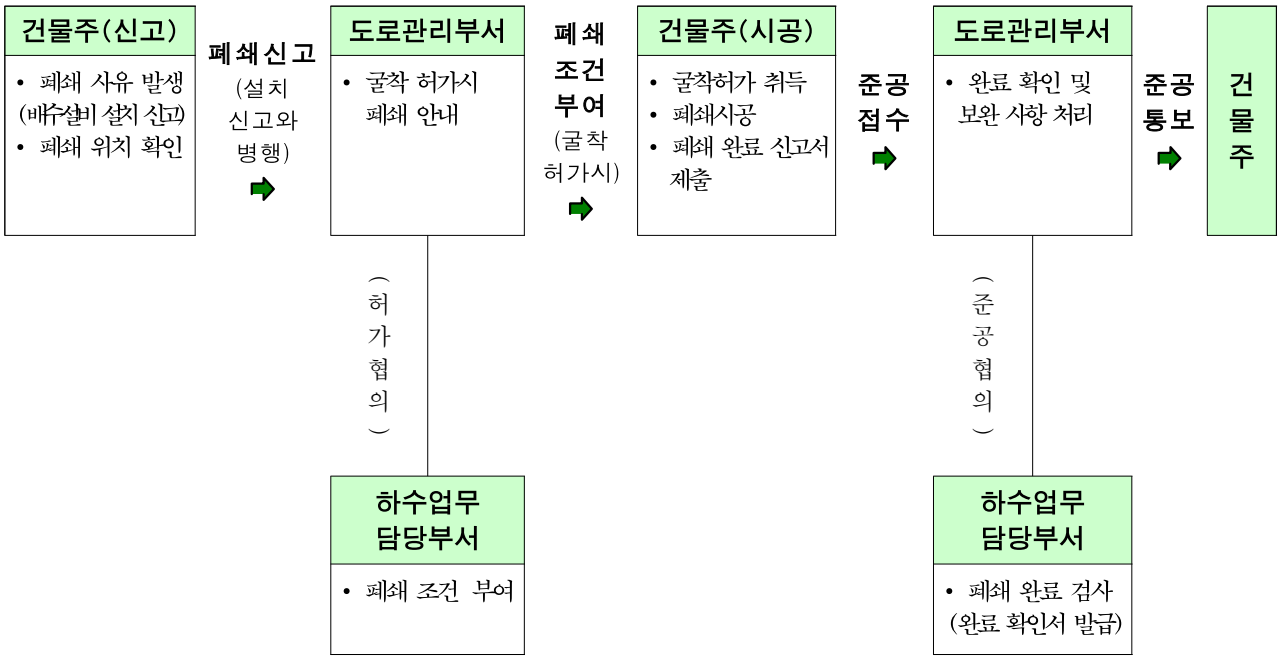

3.1.2 배수설비 폐쇄 안내 및 신고 방법

가. 폐쇄 안내

1) 시 기

○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 시

○ 건축물철거·멸실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물 건축허가, 주택사업인가 시

○ 배수설비 설치신고시

2) 방 법 : 안내서 교부

3) 안내부서 : 건축 등 인·허가 부서, 도로관리 부서

4) 각 폐쇄 의무자 : 건축 등 수허·인가자, 관리자

나. 배수설비 폐쇄 신고 방법

1)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경우

○ 인·허가 서류의 우·오수처리계획도에 폐쇄대상 배수설비를 표시하여 인·허가 부서에 제출

2)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폐쇄 대상 배수설비를 표시한 도면을 배수설비 설치신고시 하수업무 처리부서에 제출

배수설비 폐쇄 신고시 폐쇄대상 배수설비 도면표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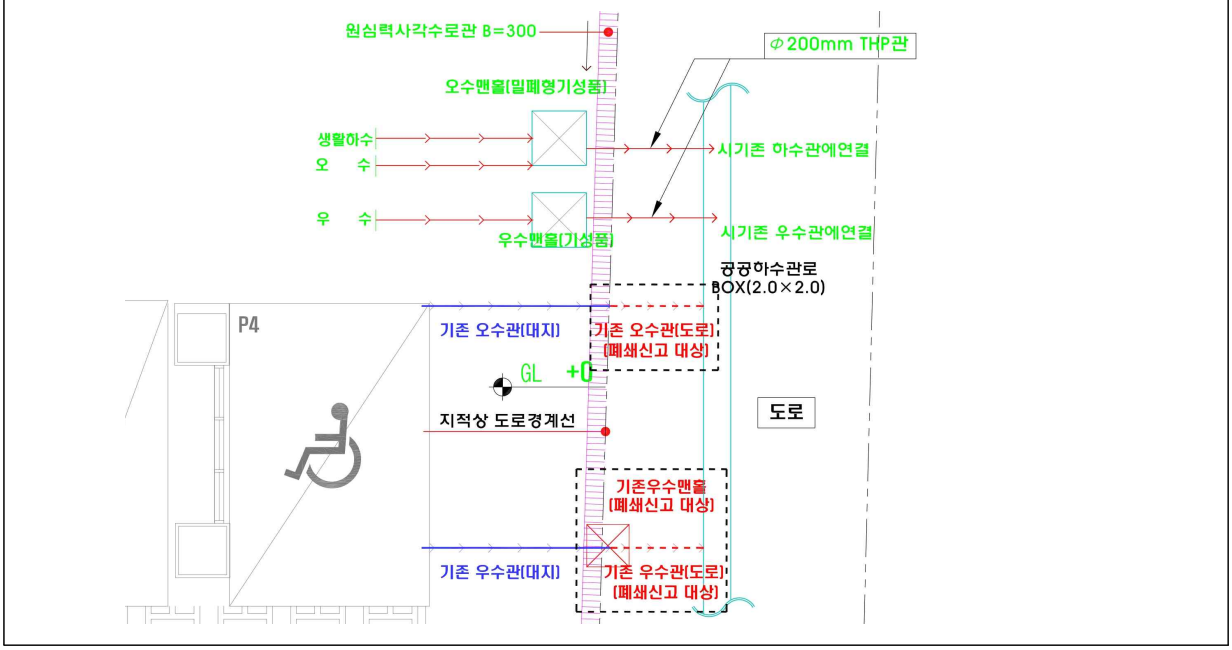

3.1.3 배수설비 폐쇄조건 부여

가.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경우

○ 건축 등 인·허가 부서

- 우·오수처리계획도에 기존 배수설비 위치 표시하여 철거에 대해 하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 건축 등 인·허가 신청자에게 도로굴착 복구허가를 득하여 기존 배수설비를 철거한 후 하수업무 처리부서에서 배수설비 폐쇄 완료 신고서를 제출토록 인·허가조건 부여

나.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하수업무 처리부서

- 배수설비 설치 신고시 기존 배수설비 위치 표시하여 도로관리부서와 도로굴착 복구 허가시 협의
- 도로굴착 복구허가 신청자에게 기존 배수설비를 철거한 후 배수설비 폐쇄 완료 신고서를 도로굴착 복구 준공계 접수시 제출토록 조건 부여

3.1.4 배수설비 폐쇄 신고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가. 검토 확인자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있는 경우 인·허가 부서의 담당자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있지 않아 관련부서에서 하수업무 처리담당부서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하수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나. 주요 검토사항

○ 폐쇄대상 배수설비의 현황과 위치의 적정성 여부

○ 폐쇄관로와 접하는 공공하수관로의 처리계획 여건

3.2 배수설비 폐쇄 시공

3.2.1 일반사항

○ 관련 자료

- 배수설비 폐쇄 계획
-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신청서

○ 도로점용(굴착 · 복구)

1)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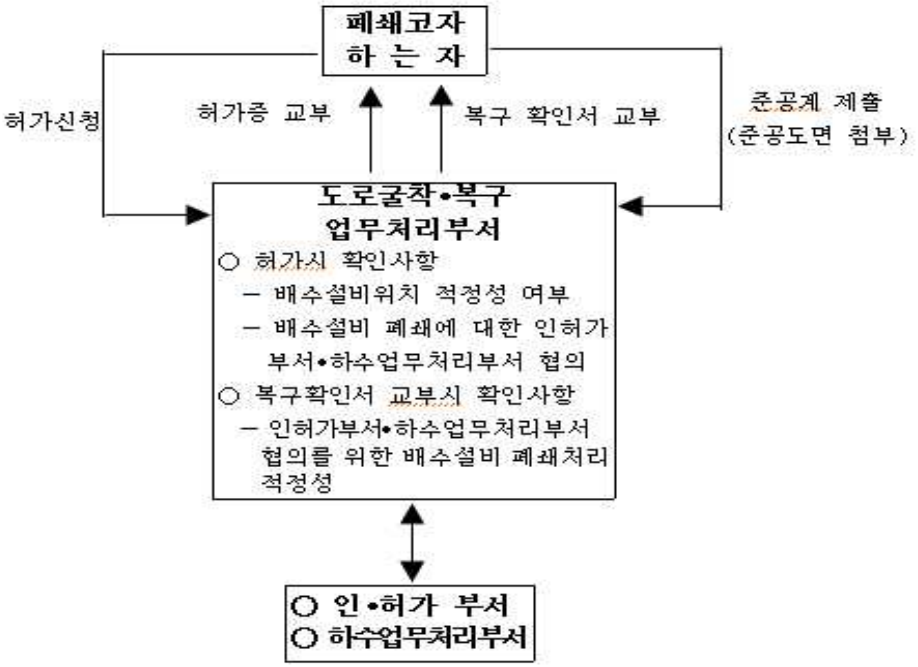

2) 도로굴착(굴착 · 복구) 허가 신청시 검토사항

- 도로굴착 · 복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허가신청시 건축 등 인 · 허가부서 및 하수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굴착 · 복구 신청 위치와 인 · 허가우 · 오수처리계획도의 기존 배수설비 폐쇄 위치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 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1조)
- 건축 등 인 · 허가부서와 하수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도로굴착 · 복구 업무 담당부서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 폐쇄 시공자 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자 제외)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하수도법 제51조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자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 대상시설물 범위

1) 공간적 범위 : 대지 경계 ~ 공공 하수관 또는 우수관

2) 작업 범위 :

- 기존관 철거 및 천공부 복구

: 기존건축물 사유지(대지) 경계 안쪽에서 공공하수관까지 연결된 가정오수관 및 우수관을 철거하고 공공하수도관 연결부를 수밀하게 막은 후 외부에서 콘크리트 등으로 시공하여 밀봉 조치

- 도로 굴착 복구

○ 폐쇄 기본 원칙

① 기존 관로의 폐쇄는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대상 관로 전체 또는 일부가 이설 불가한 지장물 하부를 통과하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몰탈 채움 등의 방법을 포함한 방안을 하수업무처리부서와 협의하여 폐쇄 할 수 있다.

③ 공공하수관의 천공부 복구는 수밀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울러 천공부 배면의 다짐을 철저히 하여 누수 및 도로침하에 대비 하여야 한다.

④ 공공하수관로의 규모가 작은 반면에 천공부분이 상대적으로 커서 천공부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공하수관로 2.5m(1본) 정도의 원관 교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3.2.2 배수설비 폐쇄 시공방법

가. 합류식, 분류식관로의 폐쇄

1) 합류식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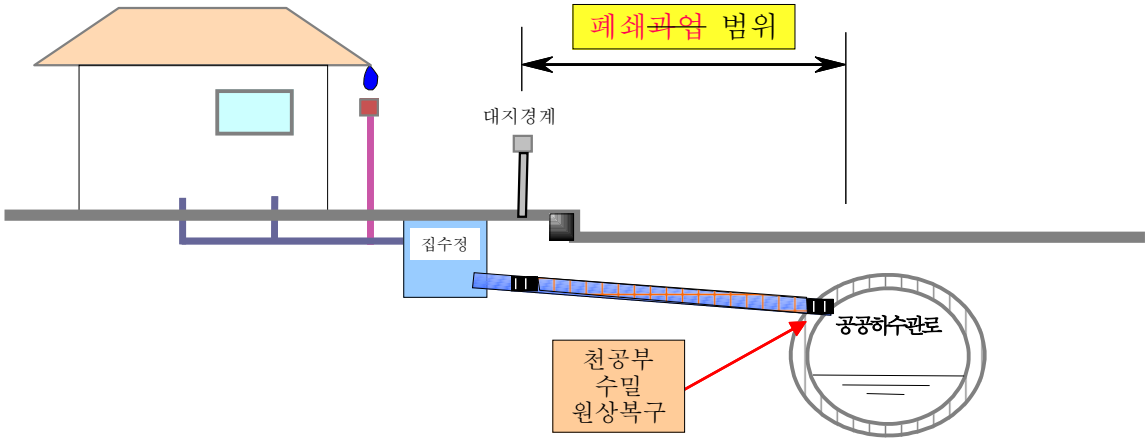

2) 분류식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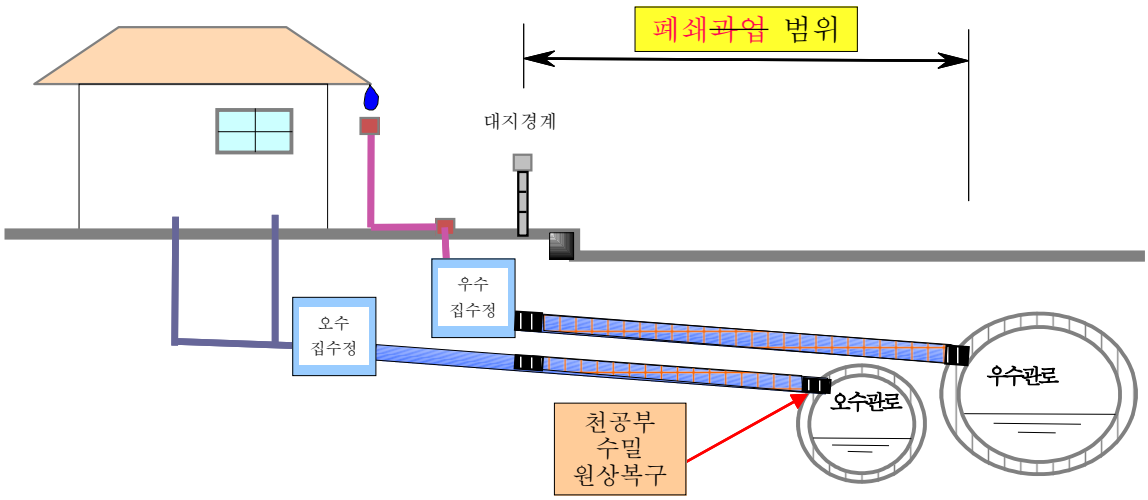

나. 관종 별 폐쇄 시공 방안

1) 원형관

○ 폐쇄 예정인 천공부에 단지관을 삽입하고 수밀한 플라스틱 재질의 밀봉캡을 삽입한 후 외부 몰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 천공부 크기가 부정형일 경우는 천공기로 재천공 후 단지관 삽입 후 폐쇄 조치토록 한다

○ 천공부의 크기 300㎜이상 이거나 부정형 천공으로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관(1본) 교체나 별도의 폐쇄 방안을 마련 하여 조치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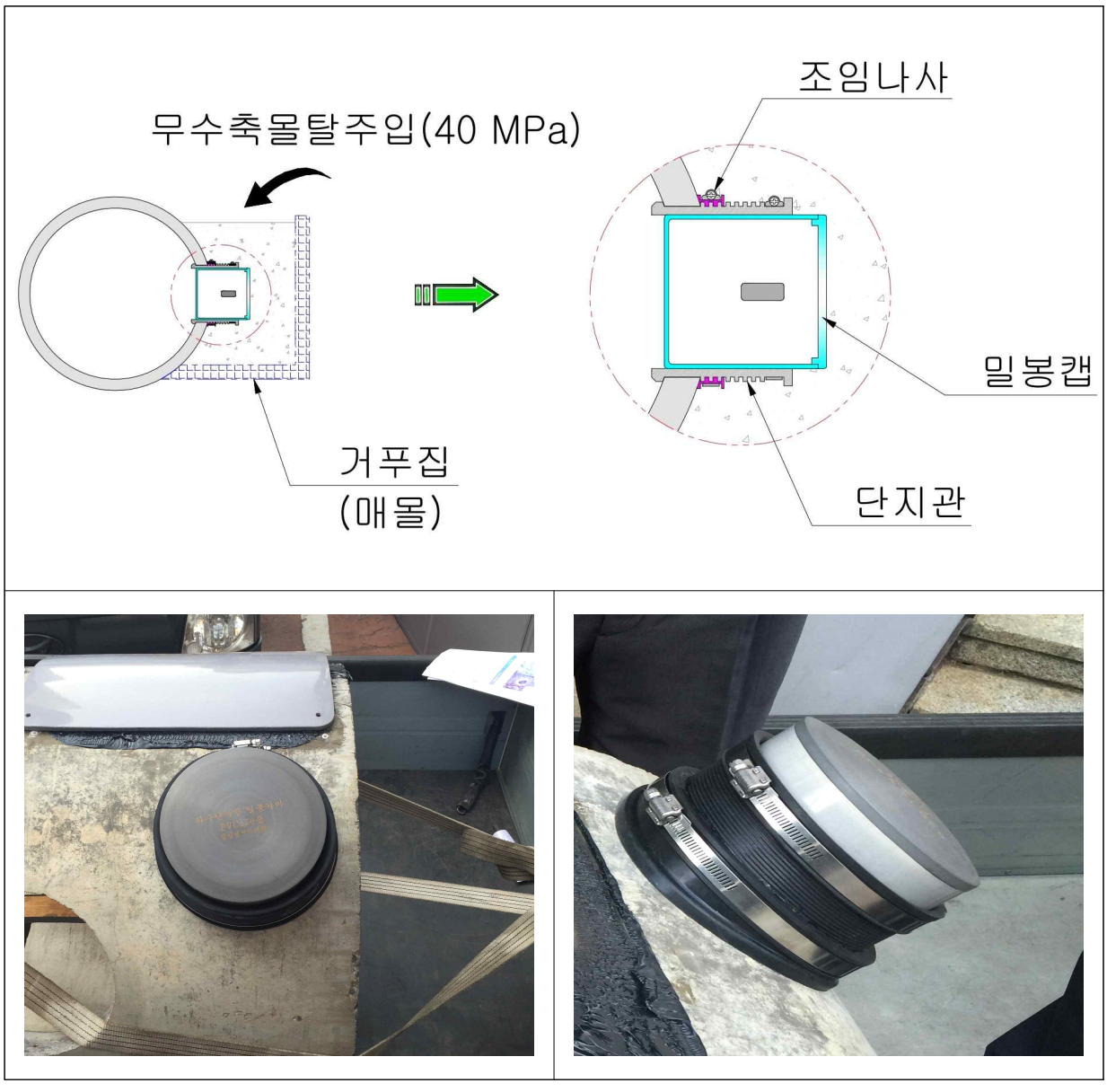

2) 사각형거

○ 사각형거에 연결된 관로의 폐쇄는 일반적으로 공공하수관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므로 천공부에 대해 암거 내측에서 수밀시키도록 한다.

○ 천공부의 암거 내측에 거푸집을 고정시키고, 외부에서 거푸집을 설치한 상태에서 천공부 상부로 무수축몰탈을 타설하여 충진을 확인하고, 밖의 거푸집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매몰시킨다.

○ 주위사항은 다짐시 물탈부에 위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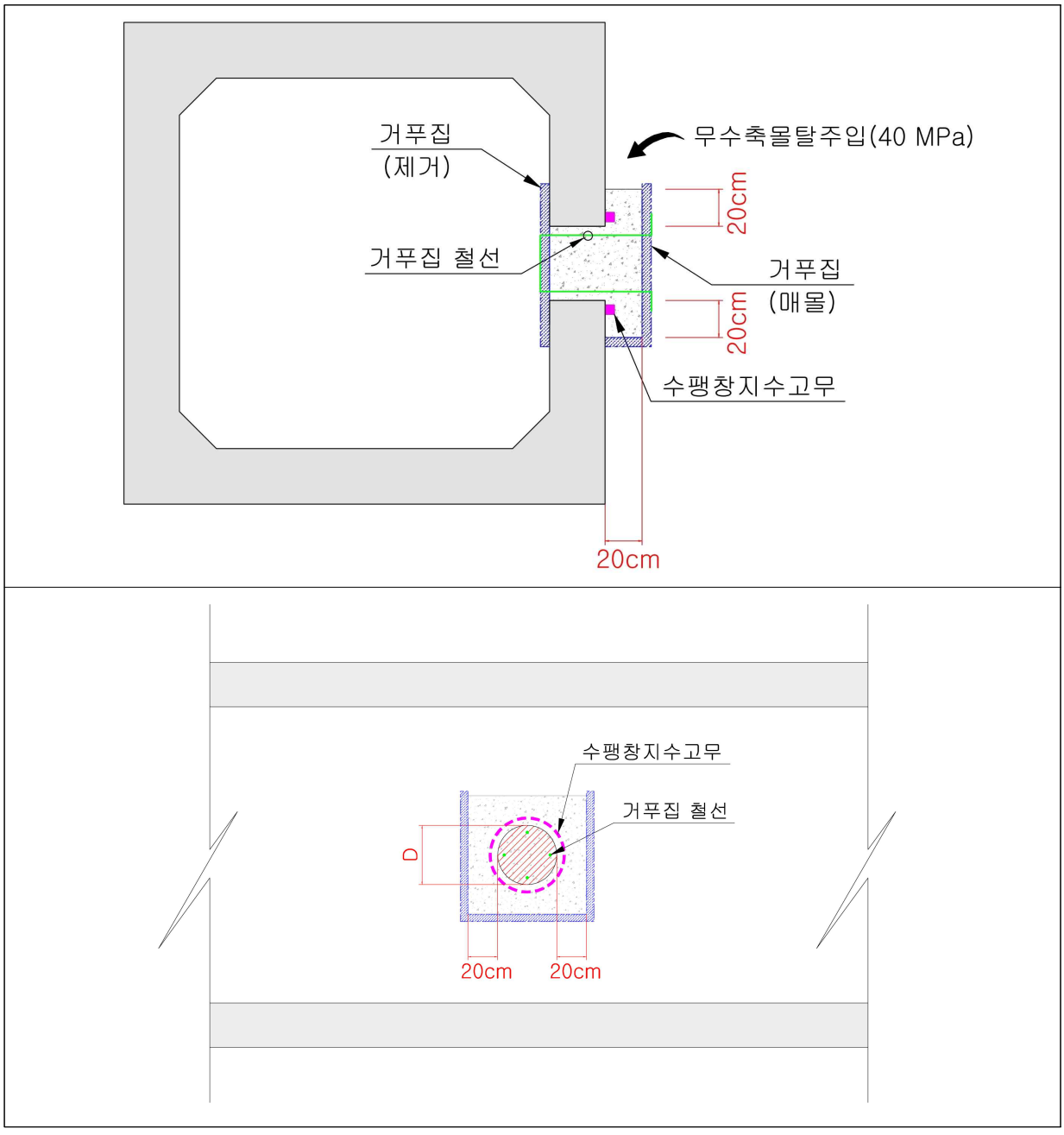

3.3 배수설비 폐쇄 완료 검사

3.3.1 배수설비 폐쇄 완료 신고 및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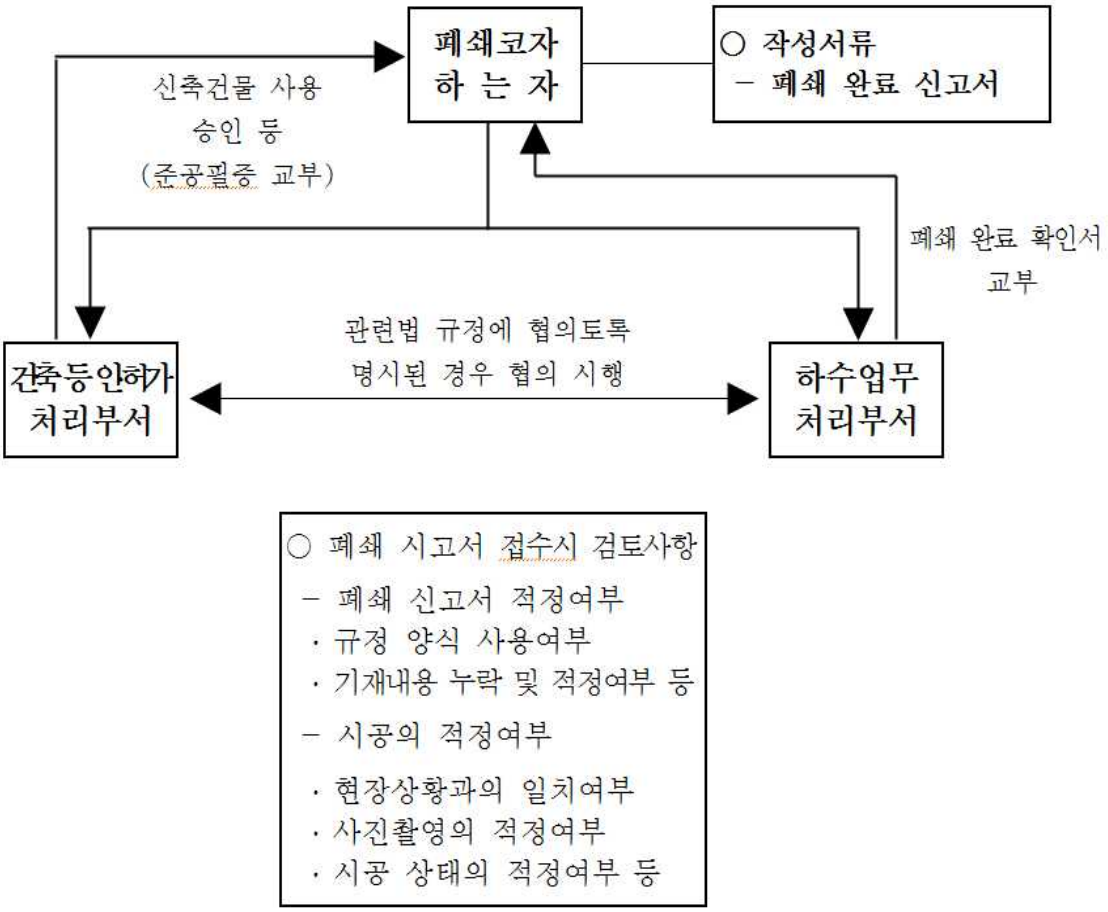

3.3.2 배수설비 폐쇄 완료 신고서 작성 및 검토내용

○ 배수설비 폐쇄 완료 신고서 작성

○ 배수설비 폐쇄 완료 신고서 접수시 적정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가. 배수설비 폐쇄 완료 신고서 작성

1) 배수설비 폐쇄 완료 신고서 양식

<table>
<tr><td colspan="7">배수설비 폐쇄 완료 신고서</td></tr>
<tr><td rowspan="3">소유자</td><td>법인(회사)명</td><td colspan="5"></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시공자</td><td>법인(회사)명</td><td colspan="5"></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td><td>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배수설비현황</td><td>배수설비위치</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시설 제원</td><td>규 격</td><td>연 장</td><td>관 구분</td><td>관 재질</td><td colspan="2">집수정유무</td></tr>
<tr><td></td><td></td><td>우수관, 오수관</td><td></td><td colspan="2">유, 무</td></tr>
<tr><td colspan="2" rowspan="2">폐쇄처리</td><td>총연장</td><td>철거연장</td><td>폐쇄방법</td><td colspan="2">기타설비 철거</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개소</td></tr>
<tr><td colspan="7">배수설비 폐쇄를 완료하고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청 장 귀하</td></tr>
<tr><td colspan="7">구비서류 : 배수설비 폐쇄(철거) 전·중·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후사진 포함)</td></tr>
</table>

2) 배수설비 폐쇄 완료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정된 양식에 기재 내용 누락 없이 작성

○ 시공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

○ 폐쇄 시공 전·중·후 사진 촬영

- 공공하수도와 접속되어 있는 지점에 대하여 지점별로 촬영
- 공공하수도와 접속되어 있는 지점 촬영시에는 현장 확인이 가능토록 촬영
- 배수설비 폐쇄 작업과정을 구분하여 촬영하되, 위치 등을 기재한 표시판을 설치 후 촬영하여 위·변조 방지

○ CCTV 영상 자료 및 보고서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폐쇄부를 관로 내부에서 식별 가능 토록 촬영
- 사업대상지 상하류 첫 맨홀까지 CCTV 촬영

나. 배수설비 폐쇄 완료 신고서 접수시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1)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자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있는 경우 인·허가부서 담당자

○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인·허가 부서에서 처리토록 되어있지 않아 관련부서에서 하수업무 담당부서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하수업무 담당부서 담당자

○ 배수설비 폐쇄 적정여부 검토 체크리스트

<table>
<tr><th>구 분</th><th>검사내용</th><th colspan="8">검사결과</th><th colspan="2">확인결과</th></tr>
<tr><td rowspan="2">폐쇄 확인서</td><td rowspan="2">규정양식
사용</td><td colspan="4">여</td><td colspan="4">부</td><td>여</td><td>부</td></tr>
<tr><td colspan="4"></td><td colspan="4"></td><td></td><td></td></tr>
<tr><td rowspan="3">시 공 자</td><td rowspan="3">신청서 상의
실 시공자</td><td colspan="2">상 호</td><td colspan="2">자격종목</td><td colspan="2">면허번호</td><td colspan="2">여</td><td>부</td></tr>
<tr><td>여</td><td>부</td><td>여</td><td>부</td><td>여</td><td>부</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7">시공의 적정
여부</td><td colspan="2" rowspan="2">구 분</td><td colspan="4">시공의 적정 여부</td><td rowspan="2">적 정</td><td rowspan="2">부적정</td></tr>
<tr><td colspan="2">여</td><td colspan="2">부</td></tr>
<tr><td rowspan="2">계획대비
폐쇄처리시설</td><td>폐쇄관로 연장</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기타 배수시설</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rowspan="2">천공부
적정복구</td><td>수밀성 확보</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구조적 안전성</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rowspan="2">기타사항</td><td>주변 지장물
저촉 위해성
(전신주 및
지중관 등)</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도로구간
적정복구 여부</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able>

3.3.3 배수설비 폐쇄 완료 조치사항 및 완료 확인서 교부

1) 폐쇄 완료 조치사항

○ 적정 여부 검토 체크리스트에 의한 확인 결과 적정한 경우 폐쇄 완료 확인서 교부

○ 확인 결과 부적정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토록 통보

2) 폐쇄 완료 확인서 양식

<table>
<tr><td colspan="10">배수설비 폐쇄 완료확인서</td></tr>
<tr><td rowspan="3">설치자</td><td>법 인 명</td><td colspan="8"></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3"></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시공자</td><td>법 인 명</td><td colspan="8"></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3"></td><td>생 년 월 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배수설비현황</td><td>위 치</td><td colspan="8"></td></tr>
<tr><td>관 종</td><td colspan="8">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td></tr>
<tr><td>관 경</td><td colspan="2">Φ mm</td><td>연장</td><td colspan="2">m</td><td>접속방법</td><td colspan="2">(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td></tr>
<tr><td rowspan="6">폐쇄확인항목</td><td colspan="6">검사항목</td><td colspan="3">점검결과</td></tr>
<tr><td colspan="6">1. 배수설비 폐쇄 적정 여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6">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10">배수설비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폐쇄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인)</td></tr>
</table>

제4장 배수설비 유지관리

4.1 배수설비 자료 및 유지관리

4.1.1 관련법규

〔하수도법 제27조 제⑥항〕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30조〕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①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⑥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⑦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하수도법 제80조 제④항 제6호〕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는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4조, 제45조 제1항〕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하수관거유지관리지침(환경부)을 준용한다.

관리자는 하수도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1.2 유지관리 및 자료관리

가. 유지관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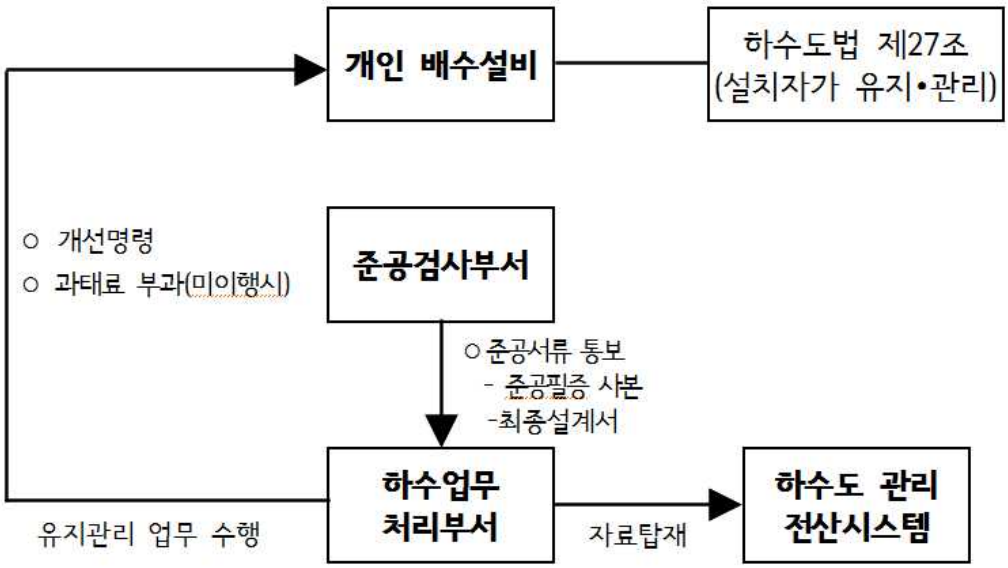

나. 자료관리 방법

○ 준공검사 부서에서는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준공필증 교부 후 준공필증 사본 및 최종 설계서와 폐쇄된 배수설비에 대한 완료 신고서를 하수업무 담당부서에 통보

○ 하수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배수설비의 설치와 폐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서울시 물재생계획과로 송부,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탑재 요청

○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탑재 후 자료 활용방안

- 개인 배수설비 관리자 유지관리시 활용
- 하수관로 정비사업시 활용

다. 일상 유지관리

○ 정기점검

-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년 1회 우기 전(6월)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및 준설을 시행토록 홍보 및 행정조치
- 배수설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0조에 의거 개선명령 조치

○ 수시점검

- 일상적 유지관리 업무 시행중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공공하수관로를 손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 조치

제5장 관련법규

5.1 하수도법 관련

가. 하수도법 〔시행 2015.6.4.〕〔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및 손괴·방해행위 금지 등) ①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2.2.1.>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국·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그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의 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배수설비의 종류·규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예정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를 하는 때에 함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하수의 수질 또는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⑦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0조(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하여 겸용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하거나 공사 또는 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변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수설비의 설치·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배수설비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배수설비에 장해를 발생시키면 해당 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장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7.]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3.7.16.>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하수관로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하수관로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로서 처리효율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분뇨수집·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⑦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2010.6.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1.14.>
1. 제4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2.2.1., 2013.7.16.>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13.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3.7.16.>
⑦ 삭제 <2009.1.7.>
⑧ 삭제 <2009.1.7.>

나.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5.4.29.〕〔대통령령 제26205호, 2015.4.20., 타법개정〕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② 삭제 <2009.6.26.>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1.2.9., 2014.7.16.>

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 주 1회 이상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월 1회 이상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11.5.>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항목·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5., 2014.7.16.>

⑥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제목개정 2014.7.16.]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6.26.>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조경공사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연계되는 배수설비를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수설비설치 신고서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1. 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
2. 배수설비설계서
3.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시공자
4. 공공하수도시설의 복구방법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직접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및 국유·공유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배수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④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9.6.26.>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고 부유물질이 리터당 80밀리그램 이상인 수질의 하수(하루에 내보내는 폐수의 최대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루에 내보내는 오수의 최대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4.7.1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5와 같다. <개정 2012.5.14., 2012.12.20.>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15.1.1.〕〔환경부령 제583호, 2014.12.24., 타법개정〕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7.>

5.2 건축법 〔시행 2015.10.7.〕〔법률 제12968호, 2015.1.6., 일부개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6.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5.3 도로법 〔시행 2015.7.7.〕〔법률 제12976호, 2015.1.6., 일부개정〕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5.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3.25.〕〔법률 제12519호, 2014.3.24., 일부개정〕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해당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⑧ 환경부장관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7.30.]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전문개정 2013.7.30.]

5.5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 관련

가. 건축 조례 〔시행 2015.10.8.〕〔서울특별시조례 제6041호, 2015.10.8., 일부개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1.>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5.29, 2009.11.11>

1.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②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중 제1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검사 등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1.1.5, 2007.5.29, 2009.11.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7.5.29, 2008.5.29, 2009.11.11>

④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신설 2007.5.29, 2009.11.11>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7.5.29, 2009.11.11>

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5.29, 2009.11.11>

나.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 2014.3.1.〕〔서울특별시조례 제5618호, 2014.1.9., 일부개정〕

제1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배수설비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8.19.〕〔서울특별시규칙 제3763호, 2010.8.19., 일부개정〕

제7조(준공검사 신청)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가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시행 2015.1.29.〕〔서울특별시규칙 제3410호, 2015.1.29., 일부개정〕

제10조(허가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굴착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서(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②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1.10.20, 개정 2010.3.11>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신설 2001.10.20>
2.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신청서에 도로복구방법을 도로관리청 복구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1.10.20><개정 2010.3.11>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등으로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관리청이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01.10.2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재난·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0, 2010.3.11.>

④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의3호 서식에 따르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을 첨부하여 도로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하고자 하는 구간이 특별시도(차도) 이거나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장 및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자는 현장 조사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5일 이내(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2010.3.11, 2010.11.4., 2015.1.29>

1. 심의회의 심의·조정내용의 반영 여부
2. 도로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3.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4. 굴착심도 및 시설규모에 대한 타당성 여부(신설 2010.11.4)
5. 영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등 법령·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및 현지여건 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

② 삭제 <2010.11.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이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을 발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제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25, 2010.3.11>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굴착·복구허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20, 2010.3.11>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1., 2015.1.29>

마.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5.7.30.〕 〔서울특별시조례 제5953호, 2015.7.30., 일부개정〕

제44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관거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운영·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8.1]

제4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자는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
2. 정기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은 6개월에 1회 이상, 하수관거 등 그 밖의 시설은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3. 정밀점검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의 정밀점검 실시시기는 영 별표1의2를 적용하고,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4. 특별점검 : 강우 전·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은 하천복개구조물 및 하수관거 중 차집관거의 주요 취약지점을 선정하여 월1회 이상 하수가스의 발생여부 및 배기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를 위한 하수가스의 채취장소는 관리자와 시험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소장에게 하수가스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조사요구가 있을 경우 바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1]